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중 “피한정후견인”을 삭제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는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,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(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)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‘건강에 관한 정보’를 추가(안 제22조의2 수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의 제목 “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를 “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12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2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----- ----- -----. 1. ~ 1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화재예방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453